

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「사업지원단 운영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,
- 나. 모자보건법 제3조(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) 및 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,
- 다. '23.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(10년 초과)됨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업무의 지속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 사무명: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「사업지원단 운영」
- 나. 위탁 유형: 사무 위탁
- 다. 위탁 내용
- 산전·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 개발 및 적용
 - 임산부·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 - 임산부·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등
 - 모니터링 평가체계 수립 및 사업효과 평가 등

라.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마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'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.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치이며,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부·모의 비중 또한 매 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.
- 우리나라에는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-아동기 개입을 지원하는 보편방문서비스 및 고위험 가정 대상 지속방문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었음.
‘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’은 효과성이 검증된 선진국의 ‘산전-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’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형 모델로 개발한 후 국내화에 성공한 사례로, 2013년 3개구(강북, 강동, 동작)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5개구 전체로 확대함.
- 이는 임신부·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‘사업지원단’의 표준화된 지침과 교육 매뉴얼 개발 및 25개 자치구 방문인력(영유아건강간호사, 사회복지사)에 대한 360시간(인력 1명당)의 교육을 통한 방문 역량 강화임.
- 사업인력의 전문성 강화, 가정방문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과학적 근거 축적·확보를 위해,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영역이 협업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전국 사업의 발판 마련 및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.

바. 위탁기간: '24. 1. ~ '26. 12.(3년)

사. 소요예산: 250,000천원('24년)

아. 수탁기관 선정방법: 재위탁(공개모집)

자.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(조직담당관-4991,2023.5.9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모자보건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제1항 및 제2항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)

-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·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(의사·한의사·조산사·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제3호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

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: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종합성과평가 해당사항 없음(5억원 미만)

※ 근 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제10조(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)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김은혜 (☎ 2133-9687)